

#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59
------	------

제출년월일 : 2007. 6.

제출자 : 제천시장

##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 (검사위원의 선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결산검사 사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결산의 제출)
- 제천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결산서의 작성)

## 2. 결산내용 요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예산현액 : 467,546,739,170원

구 분	금 액 (원)	비 율(%)	비 고
수 납 액	477,543,736,930	102	
지 출 액	317,574,739,950	67.9	

- 이 월 액

구 分	이 월 액 (원)	비 고
계	159,968,996,980	
명 시 이 월	42,883,153,170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200,000,000원)
사 고 이 월	8,321,219,820	
계 속 비 이 월	32,143,803,930	
보조금 사용잔액	1,160,435,310	
순 세 계 잉 여 금	75,460,384,750	

### 3. 결산내용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서에 의거 의회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득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359,228,784,000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 108,317,955,17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67,546,739,170원이며
- 이중 수납액은 477,543,736,93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2%를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구 분	수 납 액 (원)	비 고
계	477,543,736,930	
지 방 세 수 입	40,002,302,400	
세 외 수 입	94,526,913,560	
지 방 교 부 세	137,234,226,0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014,138,000	
보 조 금	87,030,484,790	
공기업특별회계	54,105,483,250	
기 타 특 별 회 계	54,630,188,930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67,546,739,170원에서  
지출이 317,574,739,95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7.9%이며  
그 지출액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구 分		지 출 액 (원)	비 고
합 계		317,574,739,950	
일 반 회 계	소 계	283,531,919,550	
	일반행정비	57,280,201,000	
	사회개발비	137,030,173,990	
	경제개발비	86,356,934,750	
	민방위비	448,264,230	
특 별 회 계	지원 및 기타경비	2,416,345,580	
	소 계	34,042,820,400	
	공기업특별회계	26,640,744,460	
	상수도	12,288,664,450	
	하수도	14,352,080,010	
	기타특별회계	7,402,075,940	
	수질개선 사업	4,101,332,480	
	주택사업	84,849,390	
	의료급여기금	287,511,890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0,000,000	
	주민소득지원사업	281,450,280	
	농공지구조성사업	316,331,910	
	문화마을특별회계	0	
	신월구획정리사업	114,095,800	
	도시교통사업	2,186,504,190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잉여금은 세입예산 결산액(실수납액)대 세출예산액(실지출액)을  
공제한 차인 잔액은 159,968,996,980원이며,  
이 금액은 익년도(2007년)로 이월되었고

내용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잉 여 금 내 역	금 액(원)	비 고
계		159,968,996,980	
명시이월비	제천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등(161건)	42,883,183,170	
사고이월비	송학보건지소 신축공사 사업비 등(45건)	8,321,219,820	
계속비이월	자원관리센터조성 공사 등(3건)	32,143,803,930	
보조금집행잔액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 등	1,160,435,310	
순세계잉여금		75,460,384,750	

-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格外 注意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보고서

총 37 건

### 1) 일반회계 34 건

- 세입분야 : 2 건
- 세출분야 : 32 건

### 2) 특별회계 3 건

- 세입분야 : 1 건
- 세출분야 : 2 건

내 역 : 다음에 첨부

## 2006회계 결산검사의견 목록

순번	의 견 요 약	소관부서	비 고
1	○ 이린이교통체험장조성사업 자금없는 이월사업비 조속 확보	교통팀	
2	○ 음식물수거수수료 조정(인상) 검토	생활환경팀	
3	○ 보육시설 정기적인 회계지도점검강화, 업무분장 재검토	여성유소년팀	
4	○ 교육경비보조금 정산 소홀	평생학습팀	
5	○ 축제추진위원회 정산소홀, 회계전반 지도감독 강화	축제영상팀	
6	○ 저온저장시설설치사업 정산소홀, 지도감독 강화	농축유통팀	
7	○ 간판정비사업 자부담관계 불명확, 지도감독 강화	건축팀	
8	○ 땅지원사업비중 특수물품(안마의자 등)구입잔에 대한 조사	법무감사팀	
9	○ 땅지원사업비의 효과 극대화 및 정산철저	경로재활팀	
10	○ 산촌종합개발사업지 하자보수 시공 철저	지역개발팀	
11	○ 노인사랑병원 적자발생에 따른 대책 강구, 법인분리 운영건의	보건운영팀	
12	○ 가적의도서관 위탁운영 지도감독 철저	시립도서관	
13	○ 산림대집행사업 보수공사 시행	산림관리팀	
14	○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시 사전 성과검토 분석 후 시행	교통팀, 지역경제팀	
15	○ 청풍명월하키장 상단부분 보수공사 시행	문화체육시설관리소	
16	○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금 산출방법 개선	교통팀	
17	○ 재정적자지원금 산출방법 개선, 비수익노선결손금 명칭변경	교통팀	
18	○ 공영버스지원시 부대비용 자부담처리로 개선	교통팀	
19	○ 저장버스 구입보조 대수 지자체결정토록 정책 건의	교통팀	
20	○ 시내버스 경영에 관한 개선권고	교통팀	
21	○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객관성 있는 기준 모색	인적자원팀	
22	○ 금연보조제 구입방법 개선	건강증진팀	
23	○ 보전지소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시행	보건운영팀	
24	○ 에코세라피 민간위탁사업 지구지정토록 노력 경주	한방산업팀	
25	○ 학술용역성과품 활용실적 미비, 자체설계확대 예산절감	전략사업팀	
26	○ 축구공원조성사업 예산낭비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	문화체육팀	
27	○ 조전부 심의 투용자사업 조건충족한 후 사업시행	기획예산팀	
28	○ 박달재휴양림 운영방법 개선방안 제안	산림관리팀	
29	○ 매체별 홍보효과 분석요망	혁신풍보팀	
30	○ 청풍영상위원회, 제천종합복지관 급여지급 방법개선	축제영상, 시민복지팀	
31	○ 신문구독방법 개선	혁신풍보팀	
32	○ 제천시 장학회 운영 활성화 방법 모색	평생학습팀	
33	○ 번지점프시설유지비의 위탁사업자로 변경(계약서)	관광시설관리소	
34	○ 고용촉진훈련수당 지급대상자 출석확인방법 개선	지역경제팀	
35	○ 하수도징수사용조례 미시행	법무감사팀	
36	○ 주택관리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편입검토	시민복지팀	
37	○ 문화마을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편입검토	지역개발팀	

## 2006회계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팀 명	교통 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1
-----	------	-----	------	----	---

### □ 지적(건의)사항

-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조성사업과 관련 200,000,000원이 회계연도 내 자금을 교부받지 못해 자금 없는 이월을 하였음.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수령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 조치결과(계획)

- 미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조속한 교부 요청(충청북도, 제천경찰서)

2007. 5. 31

- 적극적 대처를 통한 신속한 자금 수령으로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조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팀 명	생활환경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2
-----	-------	-----	------	----	---

### □ 지적(건의)사항

- 음식물수거수수료는 처리비용(86,000원/톤당)에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바, 이용자의 의견, 설문조사 등을 통한 수수료 조정 등 필요.

### □ 조치계획

- 제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규정에 의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 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고 있음.

- 이에 공동주택 및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월간 평균 배출량을 봉투가격으로 산출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배출자부담원칙 강화 및 지자체 청소예산 자립도를 고려한 주민부담률 연차별 인상계획에 따라 봉투가격 인상 및 음식물수거수수료 조정(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팀 명	여성유소년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3
-----	--------	-----	------	----	---

#### □ 지적(건의)사항

- 보육시설(5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정산함에 있어, 대부분의 시설이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명확한 원장이 없으며, 지출증빙에 대해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음.  
또한, 담당공무원 한사람으로 보육시설 업무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바, 업무분장 등 재검토 바람.

#### □ 조치결과

-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수시·불시 점검을 통하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인적자원팀과 협의하여 인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

팀 명	평생학습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4
-----	-------	-----	------	----	---

#### □ 지적(건의)사항

-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정산을 함에 있어 공기관임에도 지출증빙서류가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정산검사가 이루어졌음(41건).
- 향후, 정확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 □ 조치결과

-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세금계산서 징구 등 보조사업 정산철저 지시<평생학습팀-1275(2007. 6. 1)>

팀 명	축제영상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5
-----	-------	-----	------	----	---

## □ 지적(건의)사항

- 축제추진위원회의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지출증빙에 대한 원가 (단가) 자료 및 세부지출내역이 미비하며, 간이영수증으로 회계처리 처리 하는 등 전반적인 회계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있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철저한 정산이 필요하다 하겠음.

## □ 조치결과

- 보조금 집행관련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와 10개단체 보조금 집행시 유의 사항,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을 통보(2007. 6.4)하였으며, 각종 축제관련 회의시 수시 교육함은 물론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팀 명	농축유통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6
-----	-------	-----	------	----	---

## □ 지적(건의)사항

저온저장시설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천시에서 보조되는 사업 비로 사업추진함에도, 대부분 타지역업체가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사업 정산의 경우 시설설치에 따른 세부정산내역이 없고 세금계산서와 입금 표만 받아 정산하는 등 다소 소홀하였음.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고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 조치결과

- 시자체 재원으로 보조되는 사업에 대한 타지역업체의 공사발주에 대하여는 보조60%, 자부담40%인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업체선정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농가 또는 작목반등)가 선정하는 것으로 시에서 지역제한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추후 지원에 대하여는 가능한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에게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 사업정산에 대하여는 앞으로 반드시 세부사업별 정산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으며, 금년부터 시달된 표준설계도서를 지속적으로 시달, 사업추진시 적의 이용토록 하여 내실 있는 저온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 명	건축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7
-----	-----	-----	------	----	---

## □ 지적(건의)사항

- 간판정비사업 자부담관계 불명확, 지도감독 강화  
차 없는 거리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보조금 50% 자부담 50%(건물주25%, 사업자25%)의 사업비(1억원)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정산내역을 보면 자부담관계가 불명확하게 정산된 사실이 있어 주의를 촉구함.  
향후, 사업 추진시 자부담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조건 강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 조치결과

- 사업추진시 보조금 정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자부담 부분 및 유의사항 강조), 향후 보조사업 추진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 교육일시 : 2007. 06. 04(월) 17:30
  - 참석인원 : 15명(건축팀원)
  - 교육내용 : 보조사업의 집행요령 및 유의사항

팀 명	법무감사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8
-----	-------	-----	------	----	---

#### □ 지적(건의)사항

- 2006년도 냅지원사업비로 구입한 마을경로당 물품에 대해 현지검사 결과, 같은 물품(예/안마의자)이 마을별로 구입가격 차이가 있으며, 구입된 대부분 물품이 방치 되는 등 사업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집행부에서는 특수물품 구입분야에 대한 보조금검사와 계약자의 국세납부 등을 재조사하여 시정조치 하기 바람.

#### □ 조치계획

- 2006 냅지원사업비(특수물품 구입 건)집행실태 감사실시 계획
  - 기 간 : 2007. 6. 25 ~ 29(5일간)
  - 대 상 : 특수 구입물품
  - 감사중점 : 구입물품에 대한 적정가격 구입여부 및 활용실태
  - 감사반 : 법무감사팀 3명

팀 명	경로재활팀	회계별	2006일반회계	순번	9
-----	-------	-----	----------	----	---

#### □ 지적(건의)사항

- 냅지원사업비의 효과 극대화 및 정산철저
 

Dumping 사업비로 2006년도에 마을경로당 물품구입건에 대한 현지검사 결과 같은 물품(예/안마의자)에 대해 마을별로 구입가격에 차이를 보였으며, 구입된 대부분의 물품이 방치되는 등 사업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 조치결과

- 냅지원사업비 물품구입시 사전검토 철저
 

Dumping 사업비로 책정되어 마을경로당 물품구입시(건강기기등) 관련 업체의 견적서를 사전정구하여 물품에 대한 가격 및 성능을 사전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팀 명	지역개발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10
-----	-------	-----	------	----	----

#### □ 지적(건의)사항

- 송학면 오미리 산촌종합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한 바, 사업부지 선정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사면의 잔디붙임 다짐불량, 측백나무 고사, 자연석 쌓기 부실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미흡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

#### □ 조치결과(계획)

- 해당마을과 시공업체에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하자보수가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조치 후 결과보고도록 하겠습니다.

팀 명	보건운영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11
-----	-------	-----	------	----	----

#### □ 지적(건의)사항

- 노인사랑병원 적자발생에 따른 대책 강구(법인분리 운영건의) : 현대병원과 노인사랑병원 운영체인 웅포재단을 독립법인으로 분리 운영하여 투명성 확보 및 합리적인 경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함.

#### □ 조치결과

##### ○ 웅포재단법인 답변 :

1. 당 법인의 의견도 노인사랑병원과 제천현대병원을 독립 법인으로 분리 운영하여 투명성 확보 및 합리적인 경영이 필요하다는 회계결산 검사 지적 의견에 동의하며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함.
2. 다만, 분리운영이라 함은 신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각기 다른 법인이 두 병원을 분리 운영함을 말하는데 현재 현대병원의 자산 및 부채가 웅포의료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비영리 공익법인의 자산 및 부채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함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한다면 현대병원은 응포의료법인이, 노인병원은 신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신규의료법인이 노인사랑 병원을 지속적으로 수탁 운영할 수 있는지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건운영팀 검토의견 : 현재 체결중인 위·수탁계약서를 해지하고 신규 의료법인으로 위·수탁을 체결할 경우 노인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수탁자의 자격여부와 신규법인의 노인사랑병원 부지 기부 채납권리의 승계 여부 등 전문 법률 자문 및 행정적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능 시 적극 추진하겠음.  
또한, 노인병원과 현대병원의 수입 및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2003.11.21 조례제613호)

제5조(수탁자의 자격)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고 제천시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1.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병원, 의료법인(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팀 명	시립도서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12
-----	-------	-----	------	----	----

#### □ 지적(건의)사항

- 기적의 도서관 위탁운영 건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각종 지출서류의 증빙서가 미흡한 상태로 지출되는 등 전반적인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위탁사업비를 교부하는 기관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 □ 조치결과

- 기적의 도서관에 대하여는 년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수시 업무협의 차원에서 지도를 하여오고 있으나, 향후에는 정기 감사를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하고, 수시 업무협의 지도를 강화하여 기적의도서관 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과 제반 운영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 기적의도서관 위탁관리부서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시기에 운영지도가 가능한 것은 물론, 상호 자연스런 정보교환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됨.

팀 명	산림관리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13
-----	-------	-----	------	----	----

## □ 지적(건의)사항

- 산림대집행사업(금성면 활산리, 백운면 방학리)을 점검한 결과 다짐이 되어 있지 않고 돌망태, 석축, 집수정 등이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 부실한 개소가 다수 있음. 이는 감독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감독 소홀이라 생각됨.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정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람.

## □ 조치결과

- 설계내역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07. 7. 10까지 보수가 필요한 개소를 조사하여 '07. 8. 10까지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07. 9. 10까지 보수명령을 실시하여 현장과 부합되게 재시공하여 산림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음.

팀 명	교통팀(지역경제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14
-----	------------	-----	------	----	----

## □ 지적(건의)사항

- 태양광 발전사업은 일일 발전용량 90kW로 960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장검사일(5월11일) 현재 68kw 생산하고 있었음. 사업수혜로 연간 1천만원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으나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지 않으므로 추후 유사사업시 사전 성과검토를 필히 하시기 바람.

## □ 조치결과

-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에너지고갈과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천지역은 해발278미터와 7.2시간의 높은 일조량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적합한 지형조건입니다. 따라서 제천시에서는 중부내륙권내에서 굴뚝산업과 무분별한 석산개발을 지양하여 푸른산 맑은 공기로 청정지역을 후손에게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원자재가 고가의 수입품으로 설치비가 많이 소요되어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정부에서 국비를 60-80%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주차타워 태양광 발전시설은 90kW용량으로 설치하여 발전량은 인근 공공시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계산하면 투자비 환수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한에너지인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사업을 시민 및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의식을 함양시키고 청정제천의 이미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다만,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에 추후 사업 선정시 투자대비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전 성과검토를 반드시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한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 명	문화체육팀	회계별	2006	순번	15
-----	-------	-----	------	----	----

## □ 지적(건의)사항

- 청풍명월하키장 상단부분 보수공사 시행

청풍명월하키장 수해복구공사를 함에 있어 침수되었던 지하만을 공사하고 있고 상단(檀上)부분의 누수 되는 곳은 방치하고 있음.

지하공사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여도 상단부분 보수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

세심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상단(단상)부분도 함께 하자 보수하여야 할 것임.

## □ 조치결과

- 청풍명월 하키장 상단 누수부분에 대하여 시공업체에 하자처리 요청한 상태이며, 조속한 시일 내 완벽한 하자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 명	교 통 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16
-----	-------	-----	------	----	----

## □ 지적(건의)사항

-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금 산출방법 개선

비수익노선결손 보조는 현재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버스사업자의 1일 승차수입금을 산출할 때 노선별 기준 아닌 버스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익 노선 결손금 산출에 문제가 있음.(동일버스가 A노선과 B노선을 중복 배차되는 경우 버스기준으로 1일 수입금을 집계하기 때문에 노선 기준 1일 수입금 산출이 불가능함)

따라서 시내버스 사업자가 1일간 동일노선에 투입된 모든 버스의 승차 수입금을 집계하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함.

## □ 조치결과

- 벽지노선손실보상기준인원(평균승차인원 16.14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읍·면지역에 비해 시내 동지역 이용자가 다소 많을 뿐 수익노선으로 볼 수는 없는 실정임.
- 우리시는 현재 92개 노선에 1일 64대의 버스가 1,232회 운행되고 있으나 한 대의 버스가 시내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번갈아 운행하고 있어 노선의 개념이 명확치 않고, 수익금 계산은 일일단위로 정산하고 있어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의 수입금 산출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벽지노선구간 중 손실 미보상 운행노선 및 비수익노선(35노선)을 기준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 산출방식에 의거 결손금을 산출 토록 개선하겠음.

팀 명	교통 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17
-----	------	-----	------	----	----

## □ 지적(건의)사항

- 재정적자 지원금 산출방법 개선, 비수익노선 결손금 명칭변경  
재정적자 보조는 현재 재정적자지원금은 비수익노선결손금과 할인 손실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산출되고 있고, 비수익노선 결손금은 적정 수입금에서 승차수입금을 제한 금액으로 산출됨. 그러나 승차수입금 할인된 학생요금이 포함되어 비수익노선 결손금이 산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할인해 준 손실금을 중복으로 합하여 재정지원금을 산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실례)

(단위: 천원)

적정수입금	승차구입금(학생할인수입포함)	비수익노선결손금
1,357,917	533,630	824,287

\*비수익노선결손금(824,287천원)+할인손실금(70,815천원)=895,102천원(재정지원금)

따라서 버스사업자의 재정적자지원금산출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구됨.

또한, 재정적자 지원보조에서 신출항목이 『비수익노선 결손금』으로 되어 있는 바, 이미 비수익노선결손보조를 하고 있으므로 명칭이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재정적자 지원보조의 『비수익노선 결손금』 명칭은 변경이 필요하겠음

#### □ 조치결과

- 비수익노선운행 결손금과 순수할인요금에 대한 명확한 구분으로 결손금 산출시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음.
- 현행 『비수익노선운행손실보상금』 항목은 추경예산편성 시 명칭 변경 하여 집행토록 하겠음(예: 비수익노선운행손실보상 부족분)

팀 명	교 통 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18
-----	-------	-----	------	----	----

#### □ 지적(전의)사항

- 공영버스 지원 부대비용 자부담 처리로 개선

공영버스 보조금에 있어 현재 공영버스 지원은 시에서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지원금으로 사업자가 버스를 구입함. 따라서 실제 버스구입비 외에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 등까지 보조해 주는 결과를 가져옴. 따라서 버스구입비만을 보조하고 등록세를 포함한 기타부대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충북도에서 지시한 공영버스의 시장소유와 버스구입비와의 등록세 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은 재검토가 요구됨.

(도 운영지침 - 10년 전의 규정임)

충북도 운영지침대로라면 공영버스를 시장소유로 하게 될 경우 소유주 (시장)와 사용자(버스사업자)간의 명확한 책임관계나 세금문제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임.

## □ 조치결과

- 공영버스지원에 관하여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건교부훈령 제13호 1995.2.21)에 의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타 자치단체의 지원 및 운영실태를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고 차량 위·수탁 계약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하겠음.

팀 명	교 통 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19
-----	-------	-----	------	----	----

## □ 지적(건의)사항

- 저상버스 구입보조 대수 지자체에서 결정토록 정책 건의  
저상버스 구입보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까지 전체버스의 30%를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하나, 현재 운행 중인 한 대의 저상버스는 실제 이용 장애인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유류비도 일반버스의 1.5배나 소요되고 저상버스의 규격이 커서 좁은 도로의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런 상황에서 저상버스구입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면 제천시뿐만 아니라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자도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임. 따라서 저상버스구입은 지자체에서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지원대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하여야 할 것임

## □ 조치결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법률 제7382호 2005.1.27제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 2013년까지 우리시의 시내버스면허대수(68대)의 30% 이상인 22대를 도입해야 하는 실정으로 시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임

- 저상버스는 일반차량에 비해 길이는 2.1m 길고 중량은 43%가 더 무거워 협소한 커브길운행이 어렵고 유류소비량도 월평균 700ℓ 이상 추가 소비되는 등 업체의 부담이 많음은 물론 이용자도 없는 실정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제천교통에서 1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1대를 추가 도입하여 제천운수에서 운행케 함으로써 양 업체에서 매일 운행토록하고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음.

팀 명	교 통 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20
-----	-------	-----	------	----	----

#### □ 지적(건의)사항

- 시내버스 경영에 관한 개선권고

- 인구감소 및 자가용증가 등으로 시내버스운송수익금은 매년감소(약8% 정도)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요인 증가.  
<벽지노선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공영버스 지원 등>
- 적자운영 및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체관리 인력 구조조정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구노력 미흡.
- 양 업체의 시내버스 운행여건은 동일하나 임·직원 수 불균형에 따른 업체의 인건비 등 부담.

<임원 및 직원현황>

(2007. 5. 25현재)

업 체 명	합 계	유급임원	사무직	정비·청소	운전사	비 고
계	146	10	15	20	101	
제천운수(주)	76	6	9	10	51	차량수 : 34대
(주)제천교통	70	4	6	10	50	차량수 : 34대

- 운송수익 감소에 따른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이 미흡할 수밖에 없어 대민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 지적사항

- 양 업체의 과다한 임·직원 수 불균형 문제 검토 필요
- 운행여건이 동일하다고 하여 각종 지원금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볶(업체간 서비스경쟁력 제고 필요)

○ 요구사항

- 사업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및 종사인력 조정 유도
  - ▶ 유급임원 및 사무직 근무인력 과다(업체간 균형유지 필요)
- 인력감축 및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에 미온적인 업체는 각종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결과

- 업체의 임·직원 조정문제는 업체의 자발적인 실천의지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양 업체의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바,
- (주)제천교통에 비해 임·직원 수가 많은 제천운수(주)는 현 임원의 임기만료(2008.1.13일) 시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 (주)제천교통은 2007.4.17일 정기 주주총회 시 유급상임감사를 무급 비상임감사로 전환하여 유급임원1명을 감원한 바 있으며, 사무자동화 등에 따른 임여인력 발생 시 감원 등 자구노력의 의지를 갖고 있음.
  -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 업체의 자율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업체의 경영개선은 물론 그 효과가 운수종사자들의 복지수준이 향상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 자구노력 유도를 위해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경영개선 등 자구 노력의 실적이 현저한 업체에는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팀 명	인적자원팀	회계별	인적자원	순번	21
-----	-------	-----	------	----	----

## □ 지적(건의)사항

-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행 평가기준은 개인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가자가 피평가자에 대해 모두 같은 점수를 주는 등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방법에 대한 객관성 있는 기준을 모색하기 바람.

## □ 조치계획

- 개인별 경쟁우위의 평가는 자칫 과도한 경쟁으로 팀워크는 물론 유기적 업무 협조 및 정보공유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에 있어 현행 개인별 차등 지급보다는 부서평가를 통한 팀간 차등지급 및 실제 지급방법으로 개선
- 직원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방법 및 항목 개발

### 《 부서별 지급 방법(안) 》

- 원칙 : 부서그룹 편성하여 각 그룹별 등급 평가
- 지급등급 및 지급율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상위15%	15%~55%	55%~95%	하위5%
지급율	140%	120%	95%	70%

#### • 평가방법

- 부서별 직무성과에 의한 평가 결과(60%) + 기타(40%)
- ※ 기타는 향후 직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방법 개발

#### • 지급기준액 조정 : 직위 및 직급 통합 단일 기준액 적용

※ 2007년 하반기중 성과상여금 평가 및 지급방법 확정

⇒ 2007년 성과에 따른 상여금 지급부터 시행(2008년 지급)

팀 명	건강증진	회계별	2006회계	순번	22
-----	------	-----	--------	----	----

#### □ 지적(건의)사항

- 금연클리닉사업 중 금연보조제를 구입함에 있어 연간사업비(64백만원)로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하여 구입하고 있으나, 응찰한 곳이 3개업체이고 낙착율 또한 95%로 담합의 우려가 있는 바, 일시에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월별로 구입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검토를 제안함.

#### □ 조치결과

-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소요물품을 관내 업체에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내에 금연보조제의 경우 판매업체가 한곳이고, 이 업체도 사실상 모기업은 타지역에 상주하는바, 월별로 구입하여 지역업체에 구입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함.
- 이후 금연보조제 구입시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단가계약)로 하고 금연보조제는 유효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업무의 효율성증가를 위해 분기별로 구입하겠습니다.

팀 명	보건운영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23
-----	-------	-----	------	----	----

#### □ 지적(건의)사항

- 보건지소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지원되는바,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메뉴얼 등 지침화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

#### □ 조치결과

##### ○ 보건지소운영비(약품구입비) 기준 마련

: 질병별 표준처방안, 진료수입 분석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① 질병별 표준처방안 제시

진료에 대한 약품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나 보건지소별 약품사용량이 지소별로 상이함으로 진료에 대한 처방을 보건지소별로 분석, 표준처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보건지소운영비(약품구입비)를 지원.

- **분석대상 :** 원내처방 지역 4개지소(금성, 청풍, 한수, 송학)
- **분석내용 :**

- ▶ 보건지소 방문환자 수
- ▶ 질병별 투약일수 및 횟수
- ▶ 투약약품 종류 및 수량 등
- ▶ 특정질병 진료 여부 등

## ② 보건지소 진료수입 분석

: 보건지소별 약품구입비에 따른 진료수입 비교 분석.

팀 명	한방산업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24
-----	-------	-----	------	----	----

### □ 지적(건의)사항

- 에코세라피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년 8월말까지 지구지정(봉양읍 삼거리)이 안되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 해당부서에서는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람.

### □ 조치결과

-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는 '06.12.15일 선특구계획(안)을 마련하여 시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였으며, '07.1.25일 공청회를 거쳐 '07.3.23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후 '07.4.16일 정부(재경부)에 선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음.
- 관련부처 협의를 한 후, 금년 8월말까지 정부로부터 선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음.

팀 명	전략사업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25
-----	-------	-----	------	----	----

## □ 지적(건의)사항

- 학술용역에 있어 용역성과품이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는 등 활용실적이 미비한 실정으로 용역발주 시 사업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 또한, 건설용역 중 50백만원 미만은 자체설계하고 50백만원이상 100백만원 미만은 조사측량용역 일부만, 100백만원이상은 실시설계 발주도록 (2006년 예산운영지침)하고 있음에도 외주용역 발주를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음.
- 향후, 자체설계 확대 등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

## □ 조치결과 : 전략사업팀-1199(2007. 6. 4)호로 본청, 사업소, 의회, 읍면동에 조치사항 시달함

### [ 시달사항 ]

- 학술용역
  - 학술용역계획 수립 시 사전에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학술용역에 다른 용역성과품(결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 요망.
- 건설용역
  - 5천만원미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설계 확행할 것
  -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측량설계비만 용역비에 계상할 것
  - 1억이상 건설사업에 대해서만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할 것  
 ⇒ 관련규정 준수로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할 것

팀명	문화체육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26
----	-------	-----	------	----	----

#### □ 지적(건의)사항

- 축구공원조성사업 예산낭비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

자원관리센터와 연계 추진하고 있는 축구공원조성사업은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임.

#### □ 조치결과

- 자원관리센터내 조성되는 축구장3면에 대하여 사업추진주관 부서인 생활환경팀과 협의하여 사업내역 및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팀명	기획예산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27
----	-------	-----	------	----	----

#### □ 지적(건의)사항

- 조건부 심의를 받은 2007이후 투용자 사업(10여건)은 반드시 조건을 충족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바람.

#### □ 조치결과(계획)

- 투용자심사 결과 통보시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조건내용을 명시하여 조건 충족 후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2006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별도 강조사항을 문서로 통보 완료 - 기획예산팀-835호(2007. 3.14)
  -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가 재강조 통보
  - 투용자 심사시 조건부 승인뿐 만 아니라 적정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도 재심사 대상요건 해당시 재심사를 받도록 재차 강조
    - (조건부 승인사업중 조건내용에 따라 사업대상지구 또는 대상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재심사후 집행이 가능함을 강조)

- 2007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건내용 충족후 사업 추진토록 재차 강조 문서 통보 완료 - 기획예산팀-1995호(2007. 6. 8)
  - 조건부승인사업은 조건 충족한 이후에 집행가능함을 명시
  - 기타 재심사 해당요건 발생시 재심사후 사업집행토록 강조

팀 명	산림관리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28
-----	-------	-----	------	----	----

#### □ 지적(견의)사항

- 박달재휴양림 운영에 있어 예비등록제 및 독립채산제도 도입,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 □ 조치결과

##### ○ 예비등록제 운영

휴양림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관리자와 상의하여 예비등록운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예산 확보 후 운영하겠습니다.

##### ○ 독립채산제도 도입

민간위탁을 검토 중에 있으며 민간위탁 등 운영방안 확정 후 검토하겠습니다.

##### ○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활성화 방안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이용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습니다.

팀 명	혁신홍보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29
-----	-------	-----	------	----	----

#### □ 지적(견의)사항

- 청풍호반 벚꽃축제와 관련하여 TV, 라디오, 신문 광고비로 28백만원의 홍보비가 지출되었음.  
매체별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함.

## □ 조치결과

### ○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매체별 홍보효과 분석(기) 시행

-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 ▶ 설문기간 : 2007. 4. 7(토) ~ 4.8(일)/벚꽃축제기간
  - ▶ 설문장소 : 문화재 단지내 출입구(2개소)
  - ▶ 설문대상 : 축제에 참가한 외지인
  - ▶ 설문방법 : 개인별 대면 설문

### ○ 설문결과

거주지별	홍보 매체별 인원(명)							비 고
	합계	TV	인터넷	라디오	신문	지인	기타	
합 계	2,035	761	510	183	91	318	172	
서 울	246	17	109	8	8	91	13	
부 산	66		16				50	
대구,울산, 경상도	121	19	41		16	21	24	
인천,경기도	631	188	224	20	37	155	7	
• 수원	216	129	31	12		44		
광주,전라도	106		20		30	6	50	
대전,충청도	499	413	32	23		23	8	
• 충주	187	155		23		9		
• 음성	173	164	3				6	
강원도	366	124	68	132		22	20	
• 원주	285	102	28	125		10	20	

## □ 향후추진계획

### ○ 향후 홍보계획에 분석내용을 반영하여 홍보효과 제고

팀 명	축제영상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30
-----	-------	-----	------	----	----

### □ 지적(건의)사항

- 청풍영상위원회,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급여지급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를 보면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하면 또 주어야 하므로 급여에 별도의 퇴직금을 주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 조치결과(축제영상팀)

- 청풍영상위원회 직원 3인은 위 지적사항을 인지하고 2007년 5월 급여시 부터 퇴직금을 원천징수하여 별도 퇴직금 통장에 적립하고 있어 시정 완료됨.
- 또한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판례에 맞게 1년 단위 정산키로 동의하였으며, 기 분할 지급 받은 퇴직금을 추인하여 이후 추가 지급해야 할 우려를 종식시켰음.  
※판례(분할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 추인할시 별도 청구권 소멸)

### □ 조치결과(시민복지팀)

- 매월 봉급지급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본인 급여통장으로 입금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괄 관리하는 퇴직적립금통장으로 입금 적립한 후 본인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봉급내역 및 퇴직적립금 통장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겠음

팀 명	혁신풍보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31
-----	-------	-----	------	----	----

### □ 지적(건의)사항

- 제천시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일일 총 872부를 구독하고 있음. 현재는 부서별 신문구독을 하고 있으나, 혁신풍보팀에서 총괄 부수 및 부서별 부수를 조정하여 구독하는 방안에 대하여 건의함.

## □ 조치결과

- 공무원 노조 제천시 지부에서 2007. 5. 30일 전부서에 대한 신문 구독부수 조정을 실시, 2007. 6. 1일자로 50% 감축하여 조정 지침을 시달하여 시행중에 있음.

팀 명	평생학습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32
-----	-------	-----	------	----	----

## □ 지적(전의)사항

- 제천시장학회 운영에 있어 출연금 조성을 위한 연차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 조치결과

- 미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현 제천시장학회를 확대 운영하고자 「제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 입법예고 : 2007. 5. 11~5. 31
  - 조례규칙 심의 및 의회상정 : 2007. 6월
- 장학사업 확대, 기금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계획중에 있음.

팀 명	관광시설관리소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33
-----	---------	-----	------	----	----

## □ 지적(전의)사항

- 제천시 소유 번지점프시설은 오버클래스와 3년 계약으로 임대료 59,612,480원 /년(부가세별도)위탁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2006년도에 번지점프대의 수리 (도색사업)비로 20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출하였음. 현재 위탁사업계획서 조항에 시설물파손 및 망실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위탁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예산절약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 도색추진경위

- 번지점프대의 대형참사를 사전방지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05년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였던바, 도장 탈락 및 풀장 크랙 보수와 번지점프타워 상부에 간판, 지붕 등의 구조물 추가 설치시 안전성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결과 통보가 되어,
- 도장 탈락 부분의 부식을 방지하는 등 장기적인 시설보호와 외부 관광객들에게 번지점프대의 미려한 외관형성을 통해 관광시설물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색작업을 실시하였음

## □ 향후계획

- 향후 구조물의 유지보수 안전을 크게 저해 하지 않는 일반적인 유지보수관리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집행하도록 행정 지도하여 나가겠음.

팀 명	지역경제팀	회계별	일반회계	순번	34
-----	-------	-----	------	----	----

## □ 지적(건의)사항 [기타분야]

- 고용촉진 훈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훈련생들에게 개인별 카드를 지급하여 실제 수강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율 80%이상인 훈련생들에게 월50천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별 카드로 출석율을 확인하는 것은 대리출석의 문제 등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는바, 훈련생들의 “자필서명”을 통한 출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요구됨.

## □ 조치결과

- 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종합정보망(<http://www.hrdgokr>)을 구축하여 훈련직종, 훈련과정, 훈련기관등 직업훈련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도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훈련생의 자필서명으로 운영하던 관인출석부 사용을 폐지하고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훈련생에게 노동부 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하여

카드를 통해 훈련생의 출결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리출석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은 당일의 출석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30분이내 전송도록 하고 훈련생이 자신의 출석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강의실 게시판등에 게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생이 대리체크등 부정출석체크로 제적당한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4항에 의한 수강제한 처분을 받도록 하고, 훈련기관이 카드 대리체크·무단외출을 주도·묵인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9조에 의해 처분할 수 있도록 제재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전산망을 통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시 대리출석여부 확인에 활용이 용이하며 점검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필요시 본인 카드소지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훈련생 및 훈련기관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부정출석체크를 근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 명	법무감사팀	회계별	특별회계	순번	35
-----	-------	-----	------	----	----

#### □ 지적(건의)사항

-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있어 조례규정 미 시행
  -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를 2005. 4. 1.(조례 제683호) 개정하였으나, 일부 항목(욕탕)을 개정된 요율을 적용하지 않아, 2005. 5월부터 2007. 5월 현재까지 약287백만원 정도를 과소 징수하였음.
- 이는 하수도 징수기관의 기본업무를 미 이행한 사례이며, 집행부의 확인감사로 문책 및 시정을 요구함.

#### □ 조치계획

- 하수도사용료 징수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조사를 종결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공무원 문책절차 진행 중임.

팀 명	시민복지팀	회계별	주택특별회계	순번	36
-----	-------	-----	--------	----	----

## □ 지적(건의)사항

- 주택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이 9,113,840,000원에 반해 지출액은 경상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84,849,390원 (0.9%)을 지출하고 택지조성설시설계비로 304,000,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이 8,724,990,610원이 발생하였음.  
특별한 별도의 계획이 없다면 일반회계로 편입여부를 검토 바람.

## □ 조치결과

- 주택특별회계는 주택법제60조(국민주택기금의설치등) 및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에 의한 용도 이외는 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주택특별회계 폐지는 불가하며,  
우리시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융자금을 2019. 10월까지 상환 중에 있으므로 주택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은 불가합니다.
- 향후,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특별회계의 운용제한)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팀 명	지역개발팀	회계별	문화마을특별회계	순번	37
-----	-------	-----	----------	----	----

## □ 지적(건의)사항

- 문화마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23,000천원으로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사업계획이 없다면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 편입을 검토 바람

## □ 조치(의견)결과

- 문화마을 특별회계는 금성면 구룡리, 청풍면 물태리, 한수면 송계리, 송학면 시곡리의 문화마을조성사업 완료 후 발생한 수익금으로 특정 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문화마을지구에 유지관리 목적의 사업비로 수시 지구 내 유지관리가 필요할시 집행 되어야할 예산이며 금년도 송학면 시곡지구에 수해방지를 위해 사면보호 및 배수시설 설치사업에 80,000천원을 집행 하는 등 문화마을특별회계 특성상 일반회계 편입시 해당지구 주민의 집단반발 우려와 사후관리 차원에서 계속 사업비로 존치가 요망됨으로 현재 상태로 지속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